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99

발의연월일: 2024. 7. 2.

발 의 자 : 윤준병ㆍ이성윤ㆍ박민규

박희승 • 이상식 • 문정복

복기왕 · 민형배 · 서영교

전진숙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감사원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및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 등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감사원은 현재 정책감사라는 미명하에 정치감사·표적감사를 실시하는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들을 무시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실제 최근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실행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 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감사원의 공권력 남용 및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표적감사의 대표적인 사례임.

이에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남

용 금지 명시, 감사 사유 및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이유 사전 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고, 정책감사의 한계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여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감사원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며,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한정하여 감사원의 감사과정에 합리성·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감사원이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며, 감사대상의 비위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및 제51조제2항 신설).
- 나.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통보를 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 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3).
- 다. 감사원의 감찰 금지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추가함(안 제24조제4항제3호).

- 라. 출석·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답 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안 제27조제2항).
- 마. 감사원은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하기 전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34조의3제2항).
- 바. 징계·문책 요구 대상자인 본인이나 재심의를 청구한 장관, 임용 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재 심의 결정에 대해 감사원을 당사자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도록 함(안 제40조).
- 사. 감사원은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다시 실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
- 아.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이 법에 따른 적법한 감사로 명확히 명시함(안 제51조제1항제2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감사권한의 남용금지 등) ①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은 감사과정에서 감사대상의 비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의3(감사의 사전통지) 감사원은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감사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4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다만, 정책결정의 기 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절차준수 여부 등은 감찰대상으로 본다.

제25조제1항 중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을 "감사를"로 한다.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 본문 중 "감사원의"를 "제32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징계·문책 요구 대상자인 본인이나 제36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를 청구한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또는 해당기관의 장은 감사원의"로, "판결에"를 "결정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8조의 제목 "(일사부재리)"를 "(중복감사 방지 및 일사부재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

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을 "감사원은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로, "심사를 청구할"을 "실시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감사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사를"을 "적법한 감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2항 및 제3항의"로 한다.
 - ② 제20조의2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4조(감찰 사항)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수 없다.

1.·2. (생략) <u><신 설></u>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① 감사원의 <u>회계검사 및 직무감찰</u> (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증거서류· 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성할 수 없다고 인성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감찰 사항) ① ~ ③ (현
행과 같음)
4
<u>.</u>
1.•2. (현행과 같음)
3.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
책 목적의 당부. 다만, 정책결
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
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
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절차준수 여부 등은
감찰대상으로 본다.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①
감사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생략)

인 등) ①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③ (생 략)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생략)

<신 설>

② (생 략)

제40조(재심의의 효력) ① (생 제40조(재심의의 효력) ① (현행 략)

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 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 인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 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 구를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과 같음)

②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 ② 제32조제1항 및 제8항에 따 른 징계·문책 요구 대상자인 본인이나 제36조제2항에 따른 <u>다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u> 분결정은 할 수 없다.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 자로서 <u>감사를</u> 거부하거나 자 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재심의를 청구한 장관, 임용권
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또는 해당기관의 장은 감사
<u>원의결정에</u>
<u><단서 삭제></u>
제48조(중복감사 방지 및 일사부
재리) ① 감사원은 이미 감사
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
유 없이 감사를실시할-
<u><단서 삭제></u>
②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
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
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51조(벌칙) ①
1
<u>정당한 사유 없이 감</u>
<u>사를</u>
_

- 2. 이 법에 따른 <u>감사를</u> 방해한 2. ----<u>적법한 감사를</u> 자
- 3. (생략)

<신 설>

- ② (생략)
- ③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 과(倂科)할 수 있다.

- 3. (현행과 같음)
- ② 제20조의2를 위반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④ 제2항 및 제3항의-----